#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968

발의연월일: 2021. 3. 22.

발 의 자: 강선우·강병원·김경협

김승원 · 김정호 · 김종민

위성곤 • 윤관석 • 윤재갑

정춘숙 · 조승래 의원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 설에서 퇴소시키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18세가 되어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의 경우 주거가 불안 정하고 질이 낮고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 위주로 취업이 되고 있어 안정적인 자립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지급하며,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여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제38조제1항제1호의2 및 제39조의2 신설).

#### 법률 제 호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18세"를 "19세"로 한다.

제38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 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 ) ( )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	
호대상아동의 연령이 <u>18세</u> 에	<u>1</u> 9세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	
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ㆍ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	
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	
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	제38조(자립지원) ①
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	
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	
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
	금 및 자립수당 지급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신 설>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
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
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
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여
야 한다.

②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 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